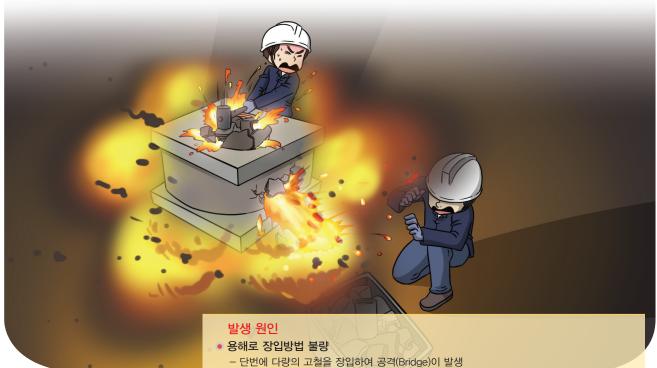


용해로 고철장입 작업 중 수증기 폭발



제조업

용해로에 고철을 장입하던 중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 쇳물이 비산되면서 화상으로 1명 사망. 2명 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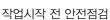


- 무리한 힘을 가하여 내화층과 냉각코일이 손상됨
- ◉ 용해로의 내화층이 손상된 상태에서 고온의 쇳물이 내화층 냉각코일을 녹여 냉각수와 접촉하여 수증기 폭발



- 1 작업시작 전 내화재 표면손상 등의 결함 유무 확인
- 2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
 - 고열물 취급 작업 시 방열복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
- **3** 무리한 장입 금지
 - 다량의 고철을 강제로 투입 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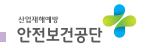




방열복 등 개인보호구 착용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(안전보건교육): 특별안전보건교육
- 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(운전시작 전 조치)
- 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3조 (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 (화상 등의 방지) 등



용해로 고철장입 작업 중 수증기 폭발

너무 많은 고철을 무리하게 투입하지 마세요!





